



경창산업

환경안전보건관리규정

표준번호

KCS-0H-0104

화학물질관리지침

제정일자(No)

2024.07.01(0)

표준 관리	적용 범위		표준 책임팀	적용 일자	검토 주기
	공통		HSE	2024.07.01	1회/2년
목적	이 지침은 경창산업(주) (이하 "회사"라 한다)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,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.				
업무범위	본 지침은 당사의 화학물질 구매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관리, 책임 및 절차에 대해 적용된다.				
성과관리	관리지표	산출기준		주기	비고
제·개정 사유	ESG 요구사항에 따른 최초 제정				



1. 업무 FLOW CHART

해당사항 없음

2. 용어의 정의

NO	용어	정의
1	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 : Material Safety Data Sheets)	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, 수입, 사용, 운반, 저장하고자 할 때에 화학물질의 명칭,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, 유해위험성, 화재, 폭발 시의 대처 방법, 물리화학적 특성, 발암성,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물질의 전반적인 특성을 기록한 자료.
2	화학물질	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.
3	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	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, 용제,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.
4	혼합물	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한다.
5	보건관리자	MSDS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는 담당자를 말한다.
6	사용팀	MSDS 대상 화학물질을 직, 간접적으로 취급 또는 이를 관리하는 팀을 말한다.

3. 책임과 권한

3.1 HSE팀

- 1) 유해화학물질 및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.
- 2)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신규 구입과 관련하여 구매 담당이나 각 팀의 사전 요구가 있을 경우 보건관리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.
- 3) 사용팀의 MSDS 보유, 비치, 경고표지 부착, 관리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한다.
- 4) 사용팀에 연 1회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교재 지급 및 교육 실시를 요청, 지도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.
- 5) 화학물질 사용에 의한 건강장해 발생 유무를 검토한다.
- 6)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안전보건 상의 조치에 관해 지도 및 조언한다.
- 7) 보건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작업환경의 보건 상 조치사항을 확인한다.

3.2 사용팀



- 1)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비치 또는 사용 장소에 게시하고, 취급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에 관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 필요한 자료는 HSE팀에 요청하여야 한다.
- 3)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.
- 4)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자는 위험물 반입 및 취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5) 유해화학물질 취급 이후 건강장해가 발생할 시 HSE팀에 통보하여야 한다. HSE팀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대체물질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
3.3 납품업체 대표자

- 1) 한글로 작성된 MSDS를 납품 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2)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한글로 표기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3) HSE팀 및 사용팀에서 업무상 필요한 MSDS 관련 자료 요청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4) 사용팀에서 MSDS 관련 교육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4. 상세 업무 절차

4.1 MSDS 작성, 비치 등

4.1.1 MSDS 작성 대상

- 1) 물리적 위험물질 : 폭발성물질, 산화성물질, 극산화성물질, 고산화성물질, 인화성물질, 금속성물
- 2) 건강장해물질 : 고독성물질, 독성물질, 유해물질, 부식성물질, 자극성물질, 과민성물질, 발암성물질, 변이원성물질, 생식독성물질
- 3) 환경유해물질

4.1.2 MSDS 작성 항목

- 1)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- 2) 위험, 유해성
- 3)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- 4) 응급조치요령
- 5) 폭발, 화재 시 대처 방법
- 6)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
- 7) 취급 및 저장 방법
- 8)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- 9) 물리화학적 특성
- 10) 안전성 및 반응
- 11) 독성에 관한 정보



- 12) 환경에 미치는 영향
- 13) 폐기시 주의사항
- 14) 운송에 필요한 정보
- 15) 법적 규제 현황
- 16) 기타 참고사항

4.1.3 MSDS 게시사항

- 1) 화학물질의 명칭
- 2) 안전보건 상의 취급 주의사항
- 3) 환경에 미치는 영향
- 4) 응급조치 요령
- 5)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

4.1.4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 의무

- 1) 회사 내에 대상 화학물질을 납품 시 납품업체는 당해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2) 대상 화학물질이 입고되면 MSDS담당자는 검수담당자로 하여금 경고표지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4.2 MSDS 심사

4.2.1 MSDS 심사 및 결과 통보

HSE팀은 MSDS를 통해 해당 물질의 건강위해물질여부, 환경위해물질여부 등을 확인한다.

4.2.2 사용 중지

사용중인 화학물질 중에 다음 각 호에 관련된 내용이 발견될 시에 HSE팀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사용팀에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- 1) MSDS를 배포하지 않고 납품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
- 2) MSDS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밝혀 졌을 경우
- 3) 사용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독성 등 유해성 여부가 새로이 규명된 경우

4.2.3 MSDS 교육

1)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며,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.

- (1)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개요
- (2)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유해성
- (3)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,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
- (4) 긴급 대피 요령, 응급조치 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내용
- (5)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
- (6)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

2) 사용팀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MSDS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교육 일지에 기록,



보관 후 HSE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5. 법적, 규제적 및 고객 요구사항

NO	요구사항	비고
1	산업안전보건법	
2	화학물질관리법	
3	ESG 고객요구 사항	

6. 기록 및 양식

NO	기록 및 양식	양식번호	보존	비고
1	화학물질관리 리스트	0H-0104-01	5년	

7. 개정이력

NO	일자	개정내용
0	2024.07.01	ESG 요구사항에 따른 최초 제정